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3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반려동물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세액공제 신설(조정훈 의원안)	3

I. 개요

1.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2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4.
- (3) 회 부 일 : 2026.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마리, 반려묘는 217만마리로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진료비로 2023년의 두 배인 146만 3천원이 지출되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

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반려동물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세액공제 신설(조정훈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 <신 설>	☐ 반려동물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세액공제 신설 (제59조의4제5항 신설) ○ <u>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2(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u> 1. <u>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제2호의 진료비는 제외)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함</u> 2. <u>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 다만, 제1호의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u> ○ 시행일: 2027.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정훈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36)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특정 비용에 대하여 그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반려동물 보유가 필수적인 항목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애완동물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병원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비율은 29.2%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5.9	25.4	28.2	28.6	29.2

자료: 각 연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¹⁾에 따르면, 2025년 반려동물 마리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은 12.14만원으로, 반려견이 13.53만원, 반려묘가 9.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예방접종이나 검진 등 병원비는 월 3.68만원(반려견의 경우 4.19만원, 반려묘의 경우 2.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의 사고·상해·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20~50만원 미만이 9.9%에 해당하며 연 평균 약 17.84만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용업체(50.8%), 놀이터(35.5%) 순으로 조사된 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중 병원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하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및 2025년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물유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10만 6,8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들이 구조·보호조치 되었으며,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들이 구조되고 있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총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

(단위: 만마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3.58	13.04	11.83	11.34	11.31	10.68

자료: 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보호비용(만원)	26.0	33.1	43.5
종사인력(명)	893	984	999

자료: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히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는 양육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물건훼손·짓음 등 행동문제(42.7%)’에 이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35.2%)’이 두 번째 이유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사유가 1+2순위인 비율이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파양하거나 향후 입양계획이 없는 사유에 있어서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월평균 양육비용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의료비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현행 본인·부양가족 등을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3% 이상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의 경우 12%(예방접종비는 15%)로 의료비(기본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을 위한 예방접종이나 검진 등

병원비는 월 3.68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비 세액 공제와 동등한 수준의 세액공제가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